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34 발의연월일: 2021. 8. 12.

발 의 자: 송석준·강대식·김미애

김석기 · 김성원 · 김영식

김예지 · 박성민 · 박 진

백종헌 · 서범수 · 서일준

서정숙 • 양금희 • 엄태영

유경준 • 유주경 • 이만희

이명수 · 이종배 · 이종성

정찬민 · 정희용 · 조명희

조태용 · 지성호 · 최승재

추경호 • 태영호 • 하영제

의원(30인)

제안이유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 사망, 2021년 6월 17일 이천 덕평 쿠팡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 등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은 화재 시 효율적인 피난 및 대응을 위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면적 20만㎡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만 적용되고 창고시설 중 지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건물 내 피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소방대원의 진입 및 공격적 작전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적재물품이 많은 곳의 화재는 적정한 수원량이 확보되어야 하나 배관이 없어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수조 또는 소화수조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방용수 부족한 상황임.

그리고 현행 소방안전관리자제도는 소방안전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전기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광산관리자, 유독물 관리자 등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화재시 초기 대응능력 부족이 문제되고 있음.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훈련과 교육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 소방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① 지하면적이 3만㎡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②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③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④ 소방훈련과 교육을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하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1항).
-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이 확보되도록 함(안 제9조의 4제1항 단서 신설).
- 다.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14항 신설).
- 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소 방훈련과 교육을 하고, 훈련과 교육결과를 소방관서에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 마.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소방훈련과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53조제1항제4호 신설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 규모 이상(창고시설은 지하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하층 이 2층 이상인 경우)의"로 한다.

제9조의4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된 소화수조 또 는 저수조의 저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소방안전관리자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0조제2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 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4. 제20조제14항을 위반하여 겸직을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여 소방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이법 시행 후 6년 이내에 제2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적합하게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① 대통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 상(창고시설은 지하면적이 3만 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하층이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 2층 이상인 경우)의----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 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 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 비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 -----. 다만, 연면적 3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상 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화 ② ~ ④ (생 략)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용수설비를 설치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 수조의 저수량을 확보하여야 한 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① 제2항의 소방안전관리자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0조제2항의 소방안전관 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를 소방본부장 또 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53조(과태료)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 략) <u><신 설></u>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7의2. (생 략)
- 8.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 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u>아니</u> <u>한 자</u>
- 9. ~ 13. (생 략)
- ③ ④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4. 제20조제14항을 위반하여 겸</u>
<u>직을 한 자</u>
②
1. ~ 7의2. (현행과 같음)
8
하거나 기간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아니
한 자
9. ~ 1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